

계룡시 고시 제2021-10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 시 도로명주소의 부여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계 룡 시 장

○ 건물번호(도로명주소) 부여

관련지번	도로명주소	고 시 일 (효력발생일)	도 로 명 고 시 일	도로명 부여사유
계룡시 두마면 왕대리 77-2	계룡시 두마면 왕대로 96	2021.11.01.	2009.05.27.	법정리 명칭(왕대리)을 이용하여 부여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8-18, 8-19	계룡시 엄사면 계백로 3034-32	2021.11.01.	2009.07.10.	지역명칭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042-840-2372)에 문의 또는 계룡시청 홈페이지(www.gyery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고시일자부터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되며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건축주 등은 거주·활동의 종료 등으로, 건물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건물번호 폐지신청(건축물대장 말소된 경우는 제외)을 하여야 합니다.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계룡시 고시 제2021-110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제8조제1항,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계 룡 시 장

1. 고 시 일 : 2021. 11. 01.(월)
2. 변경내용 : 도로구간 시작지점 (도곡로) 변경(도로구간 위치정확도 개선)
3. 고시내용 : 붙임 참조 (조서 및 도면)
4. 도로구간 등 변경 절차



※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 및 주소정보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민원봉사과(☎042-840-2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도로구간 변경 조서 1부.
 2. 도로구간 변경 도면 1부. 끝.

도로구간 변경조서 및 현황도

구분	도로명	도로구간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유사 도로명 동일 도로명	변경사유	관 할 행정구역
		시점	종점	중심선				시작	끝			
변경 전	도곡로	엄사면 광석리 58-6	엄사면 도곡리 산35-1	도면 참조	2,864	24	20	1	288	-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따른 시작구간 변경	
변경 후	도곡로	엄사면 광석리 58-6	엄사면 도곡리 산35-1	도면 참조	2,844	24	20	1	288			

현 황 도 면



계룡시 공고 제2021-715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사망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공고기간 : 2021. 10. 27. ~ 2021. 11. 10. (14일간)
- 2. 공고장소 : 계룡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3. 말소일자 : 2021. 10. 19.
-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이 ○ 영
	주 소 (대장상주소)	엄사면 도곡리 461-1번지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지 번 : 계룡시 엄사면 도곡리 461-1번지 건물현황 : 주1동 주택 52.92㎡ 부1동 창고 36.30㎡ 부2동 창고 22.32㎡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항

5. 유의 사항

- 가. 공고기간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건축과 건축팀(☎042-840-29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6.

계 룡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공고 제2021-719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계룡시장

점용· 사용자	상호 및 명칭	계룡시		
	대표자 (성 명)	계룡시장 (건설교통과장)	주소	충남 계룡시 장안로 46
소하천명		개터천		
점용·사용 개요	위치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714-8번지 일원		
	면적	(중로 1-32호) 573㎡, (중로 1-33호) 365㎡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착공일 ~ 영구점용		
	목적 및 사유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중로 1-32호, 중로 1-33호)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생략)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공고 제2021-721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계 룡 시 장

점용· 사용자	상호 및 명칭	계룡시		
	대표자 (성 명)	계룡시장 (건설교통과장)	주소	충남 계룡시 장안로 46
소하천명		용수말천		
점용·사용 개요	위치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731번지 일원		
	면적	(중로 1-26호) 44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착공일~영구점용		
	목적 및 사유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중로 1-26호)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생략)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계룡시 공고 2021- 703호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계 룡 시 장

1. 조례명 :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노인복지 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마련된 기금으로, 지속적인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3.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15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계룡시장(참조 : 가족행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등

- 보내실 곳 : 계룡시청 가족행복과(경로복지팀)
 - 주소 : (32823)충남 계룡시 장안로 46, 계룡시청 가족행복과
 - 전화번호 : 042-840-2273 - 팩스 : 042-840-2279

- ※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가족행복과(☎042-840-2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조례개정(안) 1부. 끝.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붙임1] 입법예고 의견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항목별)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2] 조례(안)**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②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예치관리) ①기금은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할 수 있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가족행복과장, 시의회 의원, 대한 노인회 계룡시지회장,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

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직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기금의 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노인교육, 충효교실, 전기, 백일장 등)
2.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된 비용
3. 노인회복지회 운영지원
4. 산하노인회(지회, 분회, 노인학교, 경로당 등) 지도육성
5.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상담소 운영
7.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가족행복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팀장으로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9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계통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실비변상) 시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통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준용)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